

##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

산업경제위원회  
2000. 3. 14.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0년 2월 29일
- 회부일자 : 2000년 2월 29일

다. 상정 일자

○ 제171회 임시회

-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00. 3. 14) 상정, 질의답변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박경국)

가. 제안 이유

충청북도 기구 및 직제의 개편으로 당연직 위원의 직명을  
변경하고자 함

## 나. 주요 골자

### ○ 직명변경

-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
공업경제국장 → 경제통상국장
-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 위원  
보건환경국장 → 복지환경국장,  
문화관광국장 → 문화진흥국장
-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 서기  
유통지원계장 → 업무담당사무관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유해영)

-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 
기구 및 직제의 개편으로 당연직 위원의 직명을 변경하  
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 생 략 ”

5. 토 론 요 지 : “ 생 략 ”

6. 심 사 결 과 : “ 원안 가결 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 없 음 ”

8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 없 음 ”

9. 별 첨

◎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- 충청북도지사 제출

##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공업경제국장”을 “경제통상국장”으로 하고, 동조 제3항제1호중 “보건환경국장”을 “복지환경국장”으로, “문화관광국장”을 “문화진흥국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중 “유통지원계장”을 “업무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<u>공업경제국장</u>이 된다</p> <p>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 1. <u>보건환경국장</u>, 농정국장, <u>문화관광국장</u>, 건설교통국장으로 임명된 자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6조(간사등) ① (생략)</p> <p>②간사는 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<u>유통지원계장</u>이 된다</p>	<p>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<u>경제통상국장</u>이 된다</p> <p>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 1. <u>복지환경국장</u>, 농정국장, <u>문화진흥국장</u>, 건설교통국장으로 임명된 자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간사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간사는 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<u>업무담당사무관</u>이 된다</p>

관련법규발췌

##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

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 (조례 제2407호 '98. 9.11)

제5조(설·국·본부의 설치) 충청북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, 자치행정국, 경제통상국, 복지환경국, 농정국, 문화진흥국, 건설교통국, 소방본부를 둔다.